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무행정 분야 전문직 공무원인 ‘법무행정관’ 신설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86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4
나. 입법필요성 검토	7
2.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법무행정관의 직무(안 제2조)	12
나. 법무행정관의 임명 등(안 제3조, 안 제8조 및 안 제10조)	14
다. 결격사유(안 제4조 및 안 부칙 제3조)	16
라. 정원·보수·징계 및 파견 등(안 제7조 및 제14조)	18
마. 정치 관여 금지(안 제13조 및 제16조)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무부는 정의 실현, 인권 보호, 법치행정의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 행정기관임. 그러나 오랜 기간 검찰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지속되면서, 법무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검찰 권력의 종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수사·기소권을 앞세운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무부는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행정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락하였음. 특히 파견 검사 제도는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인권 감시 기능마저 훼손시켜 온 대표적인 제도적 문제로 지적됨.

이제 법무부를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정의 수호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

음. 단순한 ‘탈검찰화’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기소권 독립 구조를 견제하고, 법무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요구됨.

이에 본 법안은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인 ‘법무행정관’을 신설하고자 함.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을 핵심 책무로 하며, 수사기관과의 겸직이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아울러 임용 자격, 직무, 인사체계, 정치 관여 금지, 징계 및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하위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법무행정을 수사·기소 중심의 검찰사무와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전문 공무원제도로서 ‘법무행정관’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처 또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소속 1급 이상 공무

원은 임용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법무행정관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함(안 제7조).

라. 법무행정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파견되거나 해당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1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국가 법무행정을 수사·기소 중심의 검찰사무와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 전문 공무원 제도로써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직무) 법무행정관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관 업무 중에서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 등을 그 직무·권한으로 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검사의 수사·기소 등 관련 직무·권한은 제외됨(안 제2조).

② (임명 등) 법무행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 정년은 63세이며, 검사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통한 대통령의 연임 발령에 따라 연임이 가능함(안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③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외에도, 공수처·공소청·중수청·경찰청·해경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검사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4조).

④ (정원·보수·징계 및 파견 등) 법무행정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수·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함(안 제7조). 또한, 법무행정관은 공수처·공소청·중수청에 파견되거나 해당 기관의 직위를 겸할 수 없음(안 제14조).

⑤ (정치 관여 금지 등) 법무행정관은 정당 등의 결성·가입, 정치활동 관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등 유포, 선거운동, 영리 업무 등이 금지되며(안 제13조),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안 제16조).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내용]

구 분	조문 내용
제1조(목적)	법무부 소속 법무행정관의 임용·직무 등 규정 목적
제2조 (법무행정관의 직무)	법무부 소관 업무 중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 등(검사의 범죄수사 또는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은 제외)
제3조 (법무행정관의 임명 등)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5년 임기, 연임 가능, 63세 정년
제4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수처·공소청·중수청·경찰청·해경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검사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조(법무행정관에 대한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소속 하급자를 지휘·감독
제6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	자질 평정기준에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 포함, 평정 결과는 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제7조 (정원·보수 및 징계)	법무행정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수·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함
제8조 (법무행정관의 연임)	임기 종료 시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및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연임발령
제9조(휴직)	병역휴직, 직무이탈휴직, 법률연수휴직, 질병휴직 등
제10조 (적격심사위원회)	법무행정관의 연임 심사는 「공소청법」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
제11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시 법무부장관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법무행정관 퇴직 명령 가능
제12조 (명예퇴직)	20년 이상 근무한 법무행정관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 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13조 (정치 관여 금지 등)	정당 등 결성·가입, 정치활동 관여,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등 유포, 선거운동, 영리업무 등 금지
제14조 (법무행정관의 파견)	공수처·공소청·중수청 파견·겸무 금지
제15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공무원법」 적용
제16조 (정치 관여죄)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미수범 처벌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법무행정관 임용에 관한 준비행위)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가능
부칙 제3조(법무행정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겸임 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법무행정관으로 임용 가능
부칙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나. 입법필요성 검토

현행 「검찰청법」 제44조¹⁾는 검사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겸직 검사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정원²⁾에 포함되지 않음. 그에 따라 검사는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법무부 근무가 가능한바, 2026년 2월 기준 법무부 본부에는 총 56명의 검사가 실·국장 등 주요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법무부 본부 소속 검사의 실국별 현황]

(2026. 2. 기준, 단위: 개)

구 분	합계	감찰관실	법무실	검찰국	기획조정실	인권국	국제법무국	기 타
총 계	56	3	18	18	3	5	8	1
실·국· 본부장	3		법무실장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22	감찰담당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행정소송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형사사법 공공형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 단장	인권구조과장 인권조사과장 여성이동인권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	대변인
평검사	31	2개 직위	9개 직위	12개 직위	1개 직위	2개 직위	5개 직위	

자료: 법무부

1)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이는 법무부가 소관으로 하는 각종 법무행정 업무의 특성상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이고, 법무실이나 인권국 등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검사가 고도의 법률적 지식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효율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독식하면서 법무부 소속 외청인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검찰을 관리·감독하며 ‘통제 및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법무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³⁾ 이른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⁴⁾

이에 제정안은 법무부 소관의 법무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첫째, 법무행정관이 법무정책 수립, 인권보호, 사법제도 개선 등 법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들은 본래 소속으로 돌아가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 종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여연대,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 법무부 탈검찰화”, 이슈리포트, 2025. 9. 11. 등

4) 대한민국 정부(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 9. p53

-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둘째, 이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⁵⁾ 임기제 공무원 형태의 외부 개방형 직위로 종전 검사 보임 직위를 대체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우수 인재의 유입이 어려운 문제, 이들 외부 인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짧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 부작용이 있었는바,⁶⁾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신분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한다면 법무행정 영역의 전문성 축적 및 정책 집행의 안정성·연속성 확보 등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정 부처의 소수 인력을 위하여 별도의 ‘특정직공무원’ 직역을 신설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분류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통상적으로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원 규모가 상당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사·보수·징계 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단일 부처인 법무부 본부의 일부 업무를 담당할 소규모 인력만을 위해 새로운 특정직공무원을 법률로 신설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체계의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전반적인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

5)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 발표”, 2020. 1. 20.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종전에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임용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부 검사 보임 직위수를 일부 축소하였으나, 최근 법무부 본부의 검사 보임 규모는 다시 이전과 같이 증가한 상황임.

6) 중앙일보, “한동훈 ‘文 탈검찰화’ 뒤집다…”외부인재 되레 전문성 부족”, 2022. 7. 26.

둘째, 검사가 법률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법무행정의 법률 검토 및 입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인바, 법무행정 영역에서 이들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면 그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형사사법정책 등 검사의 고유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법무행정 업무의 경우, 검사가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참여하는 것이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유기적 업무협조 차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미 법무부에는 검사 외에도 5급 공채 시험(舊 행정고시)이나 변호사 등 대상 민간경력자채용(특채)을 통해 임용된 일반 공무원과 그 밖에 수요에 따라 별도로 채용한 임기제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법무부에 새로운 특정직공무원 직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제도의 중복 및 인사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 내 ‘법무행정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를 검찰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탈검찰화’ 필요성, 법무행정의 전문성 축적 및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라는 특정직공무원 신설의 장점과 함께, 검사들이 축적해 온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 기존 공무원제도와 중복 및 인사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아울러, 제정안과 같이 현재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무행정관 신설을 검토하기에 앞서, 법무부 직제상 일반 공무원과 검사가 모두가 근무할 수 있는 ‘복수직위’에서 검사의 수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나, 법무부의 기존 민간경력자채용(특채) 비중을 현행보다 크게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봄.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제정안이 특정직공무원인 ‘법무행정관’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률 상호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무행정관의 직급, 채용 및 임용절차, 당연퇴직 사유 규정 유무, 질병휴직의 성격, 하위법령에 대한 일반 위임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무행정관의 직무(안 제2조)

안 제2조제1항은 법무행정관이 공익의 대표자임을 명시하면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관 업무 중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직무·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함.

또한, 안 제2조제2항은 법무행정관의 직무수행 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의무 및 권한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조(법무행정관의 직무) ① 법무행정관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 검사의 범죄수사 또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에 필요한 사항 3. 다른 법령에 법무행정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법무행정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2조는 검사의 직무에 관한 현행 「검찰청법」 제4조7)와 유사하게 ‘법무행정관’의 직무를 규정한 것으로,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기소 등 업무를 제외하고 ‘특히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 전문 공무원인 법무행정관 제도 신설의 취지를 밝히고 있음.

다만, 법무행정관 직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임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며, 그로 인하여 기존에 법무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 및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직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특히, 제정안은 법무행정관을 신설하여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검사가 해당 업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검사의 법무부 내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봄.

- 7)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무행정관의 임명 등(안 제3조, 안 제8조 및 안 제10조)

안 제3조는 법무행정관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함을 규정하면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거나 ②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을 임명자격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명시함.

한편, 안 제8조는 법무행정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연임을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법무행정관의 연임 심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조(법무행정관의 임명 등) ① 법무행정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법무행정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로 한다. ③ 법무행정관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제8조(법무행정관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법무행정관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법무행정관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법무행정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법무행정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법무행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법무행정관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법무행정관의 연임 심사는 「공소청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 제29조,⁸⁾ 제34조,⁹⁾ 제39조¹⁰⁾ 및 제41조¹¹⁾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무행정관의 자격과 임명·보직·정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임기·연임·정년 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신분보장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법무행정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8)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0)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검찰청법」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다만, 정년 외에는 특별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7년마다 실시하는 적격심사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퇴직 건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된 검사의 경우와 비교할 때, 법무행정관의 임기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5년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연임발령을 하여야만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분보장 및 직무 독립성 보장 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봄.

또한, 법무행정관은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임에도, 안 제10조가 법무행정관의 연임 심사를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은 체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법무행정관의 임명·연임 등과 관련해서는 신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별도의 ‘법무행정관 연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연임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결격사유(안 제4조 및 안 부칙 제3조)

안 제4조는 법무행정관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수처·공소청·중수청·경찰·해경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검사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함.

다만, 안 부칙 제3조는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겸임하였던 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처 또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검사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3조(법무행정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공소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로서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을 겸임하였던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른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안 제4조는 현행 「검찰청법」 제33조¹²⁾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수처·공소청·중수청·경찰·해경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검사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법무행정관 임용 제한을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12)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공수처 등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및 검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임용 제한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¹³⁾ 및 공무담임권¹⁴⁾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과 평등원칙¹⁵⁾ 위반 소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안 부칙 제3조는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겸임하였던 검사에 대해서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무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형사사법 분야는 물론, 그 밖의 법무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이 가능한 검사에 대하여 ‘퇴직 후’의 경우까지 법무행정관 임용을 2년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라. 정원·보수·징계 및 파견 등(안 제7조 및 제14조)

안 제7조는 법무행정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¹⁶⁾ 검사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4)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5)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6) 참고로, 제정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2203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또한, 안 제14조는 법무행정관이 공수처·공소청·중수청에 파견되거나 해당 기관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7조(정원·보수 및 징계) 법무행정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한다.
제14조(법무행정관의 파견) 법무행정관은 수사처, 공소청,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해당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안 제7조는 현행 「검찰청법」 제36조¹⁷⁾의 입법례를, 안 제14조는 「검찰청법」 제44조의2¹⁸⁾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법무행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¹⁹⁾가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

17) 「검찰청법」 제36조(정원·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18)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19)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분한다고 명시한 것과 비교하여, ‘파면’ 대신 ‘면직’이 포함되어 있고,²⁰⁾ ‘강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음.²¹⁾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권한은 행정권에 속하는 동시에 ‘사법적 기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바,²²⁾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도 검사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징계의 내용·효력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규정한 것임.

그러나 제정안에 따른 ‘법무행정관’의 경우 ‘검사’와 같은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행정관의 징계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봄.

20)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직권 면직’ 규정이 있으나, 이는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서가 아니라 임용권자의 권한에 따른 별도의 처분으로서 규정된 것임.

21) 현행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등’은 검사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2)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지만,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검찰권의 행사는 형사사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사법기관인 이중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엄격한 의미의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 내지 법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검찰권의 적절한 행사가 전제되므로, 검사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에 대하여도 법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인정하고 있음(이재상·조균석·이창운, 「형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3. 8, p. 53. 등).

검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 검사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는 피고사건의 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이행해야 할 적법절차 준수 의무와 거의 대등한 정도에 이르러, 행정부에 속하는 검사가 법원에 준하는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 칭함(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3판)」, 법문사, 2021. 3, p.28).

마. 정치 관여 금지(안 제13조 및 제16조)

안 제13조제1항은 법무행정관이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안 제1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3조제2항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제3항은 정치 관여 외에도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와 보수를 받는 직무에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3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법무행정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

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법무행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16조(정치 관여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 제43조²³⁾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는 「검찰청법」에 없는 처벌규정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제외되어 있고, ‘정치 관여’의 의미를 각 호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음.

안 제2조제2항²⁴⁾에서도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무행정관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23)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4) 안 제2조(법무행정관의 직무) ② 법무행정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제정안이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법무행정관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벌 및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²⁵⁾, 「국가정보원법」²⁶⁾, 「군형법」²⁷⁾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검사 등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48

25)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26)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7)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